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성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56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및 특별재난지역, 인구감소 지역 지방자치단체 기부에 대한 우대 적용(한병도의원안, 황명선 의원안, 정성호의원안, 이해식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이만희 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2

I. 개요

1. 정성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5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성호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4. 7. 17.
- (3) 회 부 일 : 2024. 7. 1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을, 10만원을 초과하고 5백만원 이하인 금액에 대해서는 10만원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여 그 수습에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있어서 여타 지역과 차등 없는 내용을 적용받고 있음.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20만원에 대하여 전액을,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20만원과 초과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 한병도의원안 2024. 7. 15. 제출(의안번호 1727), 황명선의원안 2024. 7. 17. 제출(의안번호 1847), 정성호의원안 2024. 7. 17. 제출(의안번호 1856), 이해식의원안 2024. 7. 31. 제출(의안번호 2435), 최은석의원안 2024. 8. 2. 제출(의안번호 2539), 이만희의원안 2024. 8. 30. 제출(의안번호 3429),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75)

□ 8건의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를 장려하고, 특별재난지역이나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기부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임.

[개정안 주요내용 요약]

일반 지방자치단체 기부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방자치단체 기부 시				인구 감소지역 기부 시
정부안 의원안	황명선 의원안	한병도 의원안	최은석 의원안	정성호 의원안	이해식 의원안	한병도 의원안	이만희 의원안
~10만원: 100/110	~30만원: 100/110	~20만원: 100/110	~50만원: 100/110	~20만원: 100/110	~20만원: 100/110	~30만원: 100/110	~20만원: 100/110
10만원 ~ 2천만원 15/100	30만원 ~ 5백만원 15/100	20만원 ~ 5백만원 30/100	50만원 ~ 1천만원 20/100	20만원 ~ 5백만원 15/100	20만원 ~ 2천만원 15/100	30만원 ~ 5백만원 30/100	20만원 ~ 5백만원 15/100
		5백만원 ~ 2천만원 15/100	1천만원 ~ 2천만원 15/100			5백만원 ~ 2천만원 15/100	

* 현행법: 10만원 이하: 기부금 × 100/110,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 10만원 × 100/110 + (기부금 - 10만원) × 15/100

한병도의원안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액을 현행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면서, 110분의 10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¹⁾ 기부금 금액 구간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2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구간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 대하여는 전액 세액공제

1) 국세 세액공제액(10만원 이하분의 경우 110분의 100)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므로, 국세·지방세 세액공제액을 합하면 기부액이 전액 공제됨.

받을 수 있는 기부금 금액 구간을 30만원 이하로 확대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명선의원안은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기부금 금액 구간을 현행 1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확대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안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 대하여는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기부금 금액 구간을 일반 지방자치단체 기부보다 우대하여 20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이해식의원안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액을 현행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면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 대하여는 정성호의원안과 같이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기부금 금액 구간을 일반 지방자치단체 기부보다 우대하여 20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최은석의원안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액을 현행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기부금 금액 구간은 5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50만원 초과 1천만원 구간에 대하여는 공제율을 20%로 상향하려는 것임.

이만희의원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 대하여는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기부금 금액 구간을 일반 지방자치단체 기부보다 우대하여 20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정부안과 정태호의원안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액만 현행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3년 도입되었으며, 현행법은 거주자가 광역·기초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의 91%(110분의 100)²⁾,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하고 있음.

2024년 2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³⁾의 개정으로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이 현행 500만원에서 2025년부터는 2,000만원으로 확대됨.

□ 8건의 개정안은 ① 일반적인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의 필요성과 ②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③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의 세액공제 우대 필요성으로 나누어 검토될 수 있음.

2) 국세 세액공제액(10만원 이하분의 경우 110분의 100)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므로, 국세·지방세 세액공제액을 합하면 기부액이 전액 공제됨.

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14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신용카드·전자자금이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먼저, 고향사랑 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전액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⁴⁾ 기부금 금액 구간의 확대, 공제율 상향, 공제 대상 기부금 한도 확대)하는 개정안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에 다소나마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평균 76% : 24%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향사랑 기부의 활성화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 보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임.

[국세 및 지방세 비중]

(단위: 조원,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조세	377.9	383.9	387.6	456.9	514.5	2,120.8
국세	293.6	293.5	285.5	344.1	395.9	1,612.6
(국세 비중,%)	77.7	76.4	73.7	75.3	77.0	76.0
지방세	84.3	90.5	102.0	112.8	118.6	508.2
(지방세 비중,%)	22.3	23.6	26.3	24.7	23.0	24.0

자료: 국세청·관세청 「징수보고서」,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4) 국세 세액공제액(10만원 이하분의 경우 110분의 100)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므로, 국세·지방세 세액공제액을 합하면 기부액이 전액 공제됨.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추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지방재정자립도	45.2	43.6	45.3	45.0	43.3

재정자립도=(지방세 + 세외수입) / 자치단체 예산규모 X 100(%)

자료: 통계청

특히, 거주자가 기부한 금액을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구간을 현행 10만원 이하에서 상향하는 안(20만원, 30만원, 50만원)의 경우 그 상향규모에 비례하여 소액기부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⁵⁾에서 기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부자에게 기부액의 30%의 범위에서 지역특산품, 지역 상품권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부자 입장에서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간까지는 세액공제를 통해 경제적 손실 없이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이 발생하기 때문임.

둘째, 공제대상 기부금액 한도를 확대하는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세법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음.

2024년 2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⁶⁾의 개정으로 연간

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개인별로 기부할 수 있는 상한액이 현행 500만원에서 2025년부터는 2,000만원으로 확대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공제대상 기부금액 한도도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고액기부를 유인할 수 있다는 것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22년 8월에 실시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의식조사’⁷⁾ 결과에 따르면, 0.8%만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세제혜택 등 유인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임.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희망 금액]

(단위: %)

기부의사 없음	~10만원	10만원 ~20만원	20만원 ~5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500만원
24.7	45.9	19.9	6.5	2.2	0.8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셋째, 공제율을 인상하는 안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⁸⁾ 공제율과 형평을 맞추는 측면에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조세특례제한법」⁹⁾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초과, 500

6)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14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신용카드·전자자금이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국승용·김창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
동 설문조사는 2022년 8월, 18세 이상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8)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외한 특별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만원 이하 기부금 부분에 대하여 1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¹⁰⁾에 따른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의 경우 1천만원 이하 분에 대하여는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30%를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를 2,000만원까지로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일정금액 이상의 기부에 대하여는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야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 공제율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됨.

□ 다만, 아래와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시행된 지 이제 1년 된 제도로 아직 그 정책적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는 추후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후 필요한 측면이 있음.

둘째, 현행 법령상 기부금을 전액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는 정치자금 기부금¹¹⁾과 고향사랑 기부금에만 있으며, 10만원 이하의 소액기

9)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2.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text{만원} \times 110\text{분의 } 100 + (\text{고향사랑 기부금} - 10\text{만원}) \times 100\text{분의 } 15$

10)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이하 생략)

부 부분에만 한정하여 운용하는 특별한 세제지원이라는 점에서, 이를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셋째, 고향사랑 기부금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효과 외에 답례품 등의 운영비 지출이 수반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체 재정 차원에서는 순지출이 발생하여 재정자원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구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점이 있음.

(2)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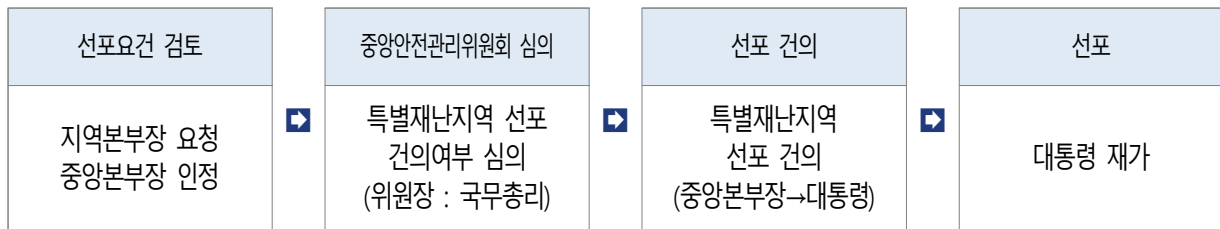
□ 다음,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 공제를 확대하는 개정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많은 고향사랑 기부를 유인하여 피해 복구 지원을 도모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점이 있음.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는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로써, 지자체별 재정력 지수를 감안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선포하게 됨.

11)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



자료: 행정안전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지자체 부담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며,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 감면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¹²⁾.

이러한 국고의 지원은 피해금액이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지수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¹³⁾에 이루어지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의 경우 통상 인적·물적 피해가 심대하여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금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고향사랑기부금 확대를 통한 지원이 피해복구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 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13)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①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고의 지원은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라 한다)의 피해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1.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군·구: 20억원
2.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군·구: 26억원
3.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군·구: 32억원
4.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군·구: 38억원
5.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군·구: 44억원

것으로 보임.

- 다만, 국비를 지방비로 전환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고향사랑 기부금 확대는 피해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 지방비 지원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우대

- 인구감소지역인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공제액의 규모를 확대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취지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고향사랑 기부금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게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보다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도입 당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의식조사’¹⁴⁾ 결과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범위’에 관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41.3%) 외에,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지방자치단체만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33.0%, ‘중소도시를 포함하여 도시지역은 기부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8.4%, ‘특별·광역시 등 대

14) 국승용, 김창호, (2022).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도시는 기부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17.3%로 나타나, 모금 지방자치단체를 선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더 우세하게 나타난 바 있음.

둘째,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는 기준지표 중 하나가 재정자립도¹⁵⁾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소액기부를 촉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할 것으로 추정되는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재정을 강화하고 지방 간 격차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시행된 지 이제 1년 된 제도로 아직 그 정책적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는 추후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후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인구감소지역 외에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가 세액공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게 되므로 해당 지역들의 추가적인 지원요청이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부산광역시 북구의 재정자립도는 11.1%로 동 지역에 포함된 동구(17.3%), 서구(13.6%)보다 재정자립도가 더 낮음.

15) 연평균인구증감율,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셋째, 인구감소지역은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에 따라 5년마다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¹⁶⁾ 지정 주기마다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었다가 제외되는 지자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차이는 지자체가 장기적인 모금 계획과 지출 계획을 수립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61

16)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부칙

제2조(인구감소지역의 지정주기) 고시일로부터 5년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